

2017. 9.6.(수) ~  
9.13.(수) / 8일간

#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## 목 차

1.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..... 3
2.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..... 3
3.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..... 4
4.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..... 5
5.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..... 6
6.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..... 7
7.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..... 7
8.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..... 8
9.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..... 9
10.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.... 10
11.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..... 10
12. 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..... 11
13.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..... 11
14. 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..... 12
15. 2017년도 제2회 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..... 13

## 심사결과

의안명	의결결과
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원안가결
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	원안가결
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복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	원안가결
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	원안가결
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	원안가결
2017년도 제2회 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	수정가결

## 주요내용

### 1.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- 발의일자 : 2017. 8. 29.
- 발 의 자 : 고재진 의원(대표발의)
- 제안이유
  - 장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“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”심사위원의 보궐 시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추가 보완해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.
- 주요내용
  -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고,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하되,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.(안 제7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### 2.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7. 8. 29.
- 발 의 자 : 고재진 의원(대표발의)
- 제안이유
 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적용대상 등에 대한 상위법의 관련 법령이 바뀌고 출자기관의 지분율이 변경됨에 따라 “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  - 본 조례의 불필요한 문구와 잘못된 띄어쓰기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하려고 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관련 규정의 상위법명과 불필요한 문구 삭제, 띄워쓰기 등을 개정함.(안 제5조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4의 규정 →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의 규정
- 지방공사·공단 외의 출자·출연법 인증 → 출자·출연법인 중
-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→ 군이 100분의 1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

▪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**

**3.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**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김 옥 의원(대표발의)

▪ **제안이유**

-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핵가족화 등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이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불안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노인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홀로 사는 노인, 고독사 등 용어의 뜻을 정함.(안 제2조)
-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현황조사,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, 고독사 노인 장례서비스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(안 제4조)

-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·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해 고독사 노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현황 조사결과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함.(안 제6조)
-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·치료, 생활관리사 파견, 응급호출 버튼 설치,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군수는 필요한 경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음(안 제8조)

▪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**

**4.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**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장성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.
- 또한,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**기념사업(안 제3조)**

- 장성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·정비사업
-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·조사·연구사업
-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

-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·예술·교육·학술사업
-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등

#### - 위원회 설치(안 제4조)

-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.

#### - 위원회 구성(안 제5조)

-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,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(교수 등)
-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

#### - 예산지원(안 제12조)

-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- 사무위탁(안 제13조)

- 동학농민혁명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### 5. 장성군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임권택시네마테크, 편백힐링센터, 북상휴양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상호 중복된 내용을 통합(중앙부처에서 확정된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 과제 개선 권고 사항)하여 장성군 문화·관광시설 관리에 일관성 부여하기 위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문화·관광시설 설치 목적(안 제1조)
- 시설현황 및 위치 등(안 제2조~제3조)

-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14조)

-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24조)

-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~제30조)

- 피톤치드 체험랜드에 관한 사항(안 제31조~제36조)

- 임권택시네마테크에 관한 사항(안 제37조~제46조)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### 6.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중앙부처에서 확정된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- 「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통합조례 제정을 위해 폐지하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장성군 조례 제2188호 「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.
- 「장성군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으로 관련 내용 규정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### 7.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중앙부처에서 확정된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- 「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통합조례 제정을 위해 폐지하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장성군 조례 제2128호 「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.
- 「장성군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으로 관련 내용 규정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**8.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**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중앙부처에서 확정된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- 「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통합조례 제정을 위해 폐지하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장성군 조례 제2129호 「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.
- 「장성군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으로 관련 내용 규정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**9.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**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「지방재정법」과 「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을 장성군 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해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활용하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부 서	출연 기관	2017년 출연금	사업 내용	관련 법령
재무과	장 성 장학회	24,977천원	지역인재 발굴 육성 교육기반 마련	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**10.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군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(안 제2조)
- \* 읍·면사무소 명칭을 읍·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(별표)

현 행	변 경
장성읍사무소	장성읍 행정복지센터
진원면사무소	진원면 행정복지센터
남 면사무소	남 면 행정복지센터
동화면사무소	동화면 행정복지센터
삼서면사무소	삼서면 행정복지센터
삼계면사무소	삼계면 행정복지센터
황룡면사무소	황룡면 행정복지센터
서삼면사무소	서삼면 행정복지센터
북일면사무소	북일면 행정복지센터
북이면사무소	북이면 행정복지센터
북하면사무소	북하면 행정복지센터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## 11.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함.
- 원활한 혈액수급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의 뜻을 정함.(안 제2조)
- 헌혈권장 기본방향, 헌혈에 관한 교육·홍보, 헌혈권장사업 재원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함.(안 제4조)
- 당해연도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함.(안 제5조)
- 헌혈 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고,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헌혈 공로자에게 표창을 하며,

헌혈공무원에게는 공가처리를 함.(안 제7조)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## 12. 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기 위함.
-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함.(안 제2조)
-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, 위원 임기,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.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-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건, 의결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-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당 경우 등을 규정함.(안 제8조)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## 13.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

▪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사유재산 침해 등 소외받는 주민들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립한 소득증대사업 시설물을 사업

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 생산자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▪ **주요내용**

건 물 명	사 용 자	사용목적	사용면적(m <sup>2</sup> )
자풍 향토식품 가공처리장	비나리체협 영농조합법인	식품가공 및 판매	98.7
덕성연 식품 가공처리장	회신영농조합법인	연식품 가공 및 판매	218.9
용산 친환경 농산물 구관장·선별장	당찬영농조합법인	친환경농산물 판매	191.8

- 사용기간 : 2017. 9. 1. ~ 2022. 9. 30.(5년간)
- 사 용 료 : 면 제
- 부 과 금 : 사용자 부담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

14. 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-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-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- **제안이유**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사전에 장성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변경기금 : 체육진흥기금
- 변경사유 :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
-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)

수 입				지 출			
항목	경정	기정	증감	항목	경정	기정	증감
전입금	300,000	0	300,000	예치금	998,288	698,288	300,000

※ **기금조성 현황(총괄)**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7년도말 조성액		
	경 정 액	기 정 액	증 감
합 계	6,845,849	6,545,849	300,000
재 난 관 리 기 금	1,413,829	1,413,829	
체 육 진 흥 기 금	998,288	698,288	300,000
사 회 복 지 기 금	3,407,889	3,407,889	
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	963,138	963,138	
식 품 진 흥 기 금	62,705	62,705	

▪ **의결결과**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9. 13.), 별첨 참조

15. 2017년도 제2회 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안

- **발의일자** : 2017. 8. 29.
-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- **제안이유**

○ 국·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대한 군비 부담액 반영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으로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농촌정주기반 조성 등 생활형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잘사는 장성건설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

▪ **주요내용**

- 총 예산규모(일반회계+특별회계)는 약 4,107억원으로 금년 1회 추경보다 486억원이 증액되어 약 13.4%의 늘어남.
-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필수사업과 지역발전, 지역경제 활성화,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

별첨

##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

1. 세 입 : 410,655,981천원

가. 삭감(일반+특별) : 해당없음

나. 증액(일반+특별) : 해당없음

다. 회계별 수정내역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 요구액 (제출 예산액)	조 정 액			수정 예산액
		계	증 액	감 액	
계	410,655,981	-	-	-	410,655,981
일반회계	393,434,386	-	-	-	393,434,386
특별회계	17,221,595	-	-	-	17,221,595

라. 삭감조서 : 해당없음

마. 증액조서 : 해당없음

2. 세 출 : 410,655,981천원

가. 삭 감

1) 일반회계 : 5,790,138천원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나. 증 액

1) 일반회계 : 5,790,138천원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다. 회계별 수정내역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 요구액 (제출 예산액)	조 정 액			수정 예산액
		계	증 액	감 액	
계	410,655,981	0	5,790,138	5,790,138	410,655,981
일반회계	393,434,386	0	5,550,138 (재해·재난 목적예비비)	5,790,138	393,434,386
특별회계	17,221,595	0	240,000 (내부유보금)	0	17,221,595

라. 삭감조서 : 붙임과 같음

1) 일반회계 삭감조서

(단위 : 천원)

쪽	예산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계	18건	6,055,138	5,790,138	265,000
127	401-01	가을밤 야간 빛 조형물 설치공사	30,000	30,000	
127	401-01	황룡강변 조명트리 설치공사	20,000	20,000	
141	307-04	황룡강 자전거 투어 개최	30,000	30,000	
141	401-01	꽃강조성사업	80,000	80,000	
141	401-01	황룡강변 산책로 조성	800,000	800,000	
141	401-01	황룡강 자전거 도로 꽃길조성	60,000	60,000	
142	401-01	장성호 수변 출렁다리 설치	3,500,000	3,500,000	
148	401-01	역사인물 표준영정 제작	200,000	200,000	
150	401-01	역사문화(석송대)탐방로 조성사업	750,000	750,000	
151	401-01	군민회관 앞 원형화단 조경	30,000	15,000	15,000
158	207-01	심혈관센터 연구 용역	300,000	100,000	200,000
211	401-01	시가지 보도 및 가로수 보호대 정비	150,000	100,000	50,000
223	401-01	청사내부 열차단 필름 공사	19,965	19,965	
223	401-01	읍면 청사내부 열차단 필름 공사	35,332	35,332	
233	401-01	청사내부 열차단 필름 공사	13,310	13,310	
273	401-01	청사내부 열차단 필름 공사	11,616	11,616	
285	401-01	청사내부 열차단 필름 공사	10,285	10,285	
291	401-01	청사내부 열차단 필름 공사	14,630	14,630	

2) 특별회계 삭감조서

(단위 : 천원)

쪽	예산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	해당없음			

마. 증액조서

1) 일반회계

-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 : 10,206,651천원(증5,550,138천원)

- 내부 유보금 : 240,000천원(증240,000천원)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